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191호 2016. 7. 11(수)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 1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 14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0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96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2조 참조)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봉사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제6조(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④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2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2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이 끝남으로써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법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 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제5장 민원처리통보

제14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 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 진술) ① 위원장은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적용의 예외) 본청 이외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3조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개 최 일 시 :

□장 소 :

□민원사무명 :

□심 의 안 건 :

적 합	부 적 합	비 고

※해당(적합 및 부적합)란에는 근거 규정 등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술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원회직위 : 소속 : 직 : 성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 . .			처리기한	. . . 까지(일간)		
구 분	민원명	주 된 소재지 (위 치)	주된 행위 (내용)	관련 부서	근거 법규	저촉 여부	예상되는 문 제 점
주목적 민 원							
복 합 민 원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

<table>
<tr><td>안건번호</td><td colspan="4"></td></tr>
<tr><td>민 원 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성 명</td><td row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성 별</td><td></td></tr>
<tr><td colspan="2">주요안건</td><td colspan="2">심의사항</td><td>의결사항</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결정함.

년 월 일</td></tr>
<tr><td>소 속</td><td>직 위</td><td>성 명</td><td>서 명</td><td>의 견</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별지 제4호서식]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처리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명				
접수일		처리완료 예정일		
민원처리 진행상황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인천광역시서구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97호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 113조”를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를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총무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 리 관 : 총무국장”을 “재 무 관 :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분 임 경 리 관”을 “분 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 무 관 리 관”을 “부 채 관 리 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의하여”를 “기재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자원순환담당”을 각각 “수도권매립지담당”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6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33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환경미화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이하 “도로환경미화원”이라 한다)”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근무에 관하여”를 “근무는”으로,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을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균등대우)”를 “(균등 대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또는 이상”을 “물건 또는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해요인”을 “위해 요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체에 대하여 당일”을 “전부를 그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전부에 대한 보관·책임”으로, “못함으로 인하여”를 “못해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보조감독원 및 임무)”를 “(보조 감독원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감독원”을 각각 “보조 감독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감독원은 당일”을 “보조 감독원은 그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18조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산입”을 “포함”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 중 “자는 휴가사용계획서를 휴가발생”을 “사람은 휴가 사용계획서를 휴가 발생”으로 한다.

제29조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1조 후단 중 “2차적으로 6개월 내에서”를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3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간주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로환경미화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기준은 단체협약서 제10조의1에 따르되, 징계위원회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며 징계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8조 중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을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달”로,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39조 중 “이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한다.

제40조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한다.

제41조 중 “재해발생”을 “재해 발생”으로, “이룩하기”를 “조성하기”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험 방지 및 보건위생”으로, “복종할 것”을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해발생”을 “재해 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내어∨놓으며”를 “내어 놓으며”로, “흡연 및 화기사용”을 “흡연 및 화기 사용”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관련법령”을 “관련 법령”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6조 중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를 “단체협약에 따라 보상을 한다”로 한다.

제47조 중 “행하지”를 “하지”로 한다.

제4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밖에 관련법령”을 “밖의 관련 법령”으로, “한도 내”를 “한도”로 한다.

제50조 중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를 “규정의 시행에”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제34조 관련)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주의	경고	감 봉	정직	해고
발생시	업무과 관련하여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자				1회	2회
	업무과 관련하여 형사입건 기소되어 300만원 미만 벌금 확정자			1회	2회	3회
	무고한 투서 등 총화를 해하는 자		1회	2회	3회	4회
	금품요구,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			1회	2회	3회
	자가수거처 폐기물 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3회
	공공용 봉투 제공 행위			1회	2회	3회
연단위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무단결근		1회	2회	3회	4회
	동료간의 폭행 및 폭언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 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 중 주민 등에게 행패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시간 중 도박 또는 사행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 무단투기, 소각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근무시간 미준수	1,2회	3회	4회	5회	6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2회	3회	4회	5회	6회
	품위손상	1,2회	3회	4회	5회	6회
	복장위반(안전장구 미착용자)	1회	2회	3회	4회	5회
처 분 등 의 기 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를 합산처분 가. 감봉처분 연 3회 이상 : 해고 나. 경고처분 연 5회 이상 : 해고 2. 동시에 수 개의 위반행위가 경합 시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함 3. 처분 유효기간은 1차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횟수로 한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경고-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해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고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고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9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고산로40번1길 27-1외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7. 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7-0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7-11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1길 27-1 (원당동)	2008-12-31	고산로 40번길에서 첫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1-4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74번길 8-5 (원당동, 세종주택)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92, 291-1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48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92-3, 291-1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50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92-4, 291-14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54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91-1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276번길 58 (대곡동)	2013-07-30	대곡로 시작지점부터 약 2,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3-67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249번길 46-15 (경서동, (주)성림)	2009-11-11	로봇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0-2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52 (오류동)	2012-10-25	"가슴에 붙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82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안길 23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54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2번길 11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1-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8번길 68-5 (원창동)	2009-09-22	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A13블럭1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5-2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2-8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15-10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2-1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15-8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2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0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2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2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1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19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331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8번길 24-24 (왕길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99-2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0 (연희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1-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44번길 23 (경서동, 엠그레이(M-Grey)하우스)	2010-11-11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1-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329번길 20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낼로의 시작점에서 3,2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31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2번길 32-7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김미선/서구|총무국|홍보미디어과/2016-07-08 15:26:51